

「사업비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관련 준비서류 안내(사업 수행기관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비 수령을 위한 전용계좌·카드 신청 필요 시
본 안내장의 내용을 참고 및 지참하시어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방문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전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계좌 개설 요청 시 『**계좌 개설 목적 및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사업비) 수령 계좌 개설을 위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안내장을 작성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정부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가 신설**』되어 계좌 개설 시 안내장에 기재한 '**기본 준비 서류**' 외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영업점 방문 전 제출하실 서류를 **미리 방문 예정 영업점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진흥원의 보조사업비 전용 체크카드**』는 **2019년도 과제부터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아닌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접수(즉시 발급 아님)가 가능**하니, **계좌 개설 시 동시 신청** 바랍니다.

진흥원 사업비 전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용카드 배송 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카드 (개인 체크) 이미지



사업비 카드 (법인 체크) 이미지





본 안내문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 제시 바랍니다.

본 안내문의 증빙서류 사용 유효기간 : '19. 8. 30까지

신규 절차

필요서류 준비
(추가 필요서류 여부 영업점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서류 & 안내장 지참)

영업점 업무처리 진행
(하단 영업점 직원용 참조)

유의 사항

※ **첨부된 필요서류 및 협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내점 시 **본 안내문과 함께 영업점에 제출** 바랍니다.

☞ '협약서', 대표자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합의서' 등 **협약 관련 서류** 등을 추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 촬영본' 등은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없으니, 반드시 정상 출력하여 사용 바랍니다.

※ 사업비 전용계좌인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 통장(보통예금)"**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 다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인 경우**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저축예금 X)을 개설 합니다.

※ 2019년부터 **사업비 전용카드**가 **영업점 발급접수 가능**하니 **계좌 개설 시 동시 신청** 바랍니다.

☞ **카드 발급 후 연결방법** : 시스템 접속 → 과제선택 → 금융정보 → 카드관리 → 은행 선발급카드 연결

본 안내문의 증빙서류 사용 유효기간 : '19. 8. 30까지

영업점 직원 업무처리용

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징구**(본 안내장 만으로 목적증빙 대체 불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징구)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표준 협약서, 보조금 지급기관 명의의 공문 등

☞ 사업자 실체 추가 확인 필요 시 문의처 : 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697-7716

※ 연구/사업비 목적증빙서류 미 지참 시 '법인(사업자)계좌 목적증빙' & '실체 확인' 대체 可

※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제도, 고객확인 제도 등에 의한 수신 업무기준 및 징구서류는 동일



② **신한 연구 & 사업비 우대 통장(보통예금) 신규** → 사업비 입금용 통장

☞ **순수 개인(미창업자)**의 경우 연구&사업비 우대통장 신규 불가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신규

③ **인터넷뱅킹 신규(기업 또는 개인) or 출금계좌 추가**

☞ 위탁운영기관은 필수 가입, 그 외 사업수행기관은 권장사항

④ **통지 서비스 신청(통지번호 : 01043917775 → 진흥원 전용 금융전문번호)**

필수 가입(순수 개인 포함)

☞ 화면번호 #510021, 거래구분 '11' 서비스 신규(연구사업비 수령고객)

☞ 필수 값 자동 셋팅되며, 수수료 출금계좌는 신규 개설 계좌로 선택(정상 신규 시 수수료 본부 일괄 면제함)

⑤ **사업비 전용카드(법인체크 or 개인체크) 신청 접수**

일반 법인 T&E / 일반 체크 카드 불가

☞ 영업점 즉시 발급은 불가하며, 아래 제휴코드 확인 후 일반 (법인)체크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제휴코드 :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체크** DDD94F(브랜드 : MASTER) / **개인 체크** BAAAP1(브랜드 : VISA)

○ 신한 연구&사업비 우대통장

· 우대 서비스(세부 서비스 내용 업무기준 참고) :

① 전자금융수수료 면제(단,납부자 자동이체 및 대량이체 수수료는 면제불가)

② 당행 CD/ATM을 이용한 본 통장의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 수수료 우대조건:

① 사업비 전용카드의 신한은행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②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화면을 이용한 급여이체 시

③ 유동성 예금의 최근 1개월 평균 월 4백만원 이상

[영업점 직원 문의]

기관고객부 공공자금팀

☎ 5 - 3369, 5581, 5569 (내선)

No.155 [대포통장 근절] 금융거래 목적증빙 업무 강화

☞ 주요 공지

☞ 대포통장/보이스피싱 근절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1)

아래 기본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하실 영업점에 유선으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2016.08.31기준]

구분		법인	임의단체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1,86,87,88,84,85 •82(법인인감 신고업체의 경우)	•80,89 •82(법인인감 미신고업체의 경우)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법인인감 사용가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납세)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 SMS 통지 서비스	본인 신청시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의 서류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	•통장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통장신규 '대리인 신청시'와 동일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 (중간번호)		•83	•01 - 79 •90 - 99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용도장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과 통장사용도장 •위임관계 서류 다음 중 하나 ①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② 계좌개설요청공문 + 관인대장 ③ 대표자의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용도장(인감도장 사용가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 SMS 통지 서비스	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본인 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뱅킹 서비스 신청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뱅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통장 신규 '본인 신청시'와 동일
	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대리인신분증 •관인대장사본 + 위임장(관인날인) •기업 인터넷뱅킹 신규요청 공문 •통장 및 통장인감 ※ 인터넷 뱅킹 신청서 뒷면에 관인날인	•대리인은 신청불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II)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 시행중인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제출서류(예시)

[2016.08.31기준]

단체 구분	징구 서류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설립 목적 확인 서류
	대표자 내점	대리인 내점		
주식회사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유한회사			• 출자자 명부, 정관 등	
합자회사			• 사원 명부, 정관 등	
합명회사				
사단법인			• 출연자 명부, 사원 명부 정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재단법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시)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위임관계를 알수있는 서류(위임장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보유시)	• 정관, 규약 등 •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확인서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서면(공문, 실제 소유자 확인서 등)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회칙,(관리)규약, 소속 증명서(종교단체), 인허가증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설립목적 정보 출력 및 첨부 가능
개인의 대리인	• 금융실명제와 동일(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과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서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전용카드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III)



사업비 전용카드(체크) 신청시 기본서류이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함에 유의

단체 구분	징구 서류(체크카드 접수 시에 한함)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신분증 사본(대리인), 주주(출자자) 명부, 정관 사본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內 법인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 서류와 동일 - 법인등록번호가 없거나, 고유번호증 內 대표자 생년월일 표기 시 개인사업자와 동일

※ 상기 기본 서류 외 경우에 따라 인가증, 신고필증, 정관, 규약, 회칙 등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영업점 문의

※ 신용정보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필요(법인 동의서-법인 인감, 대표자 동의서-대표자 개인 인감)

※ 원본서류는 최근 3개월 內 발급분,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지점의 경우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점의 서류 일체(상기 기관별 추가 서류)